

의 안 번 호	제964호
의 결 연 월 일	. . . (제 회)

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자	산업경제위원장
제안연월일	2025년 4월 22일

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64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4월 22일

제안자 : 산업경제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영과 관련한 조례, 정관의 내용 중 상위 법과 불일치 하는 사항을 일치시켜 충북신용보증재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, 법령안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재단의 업무를 근거법과 일치하도록 직접 인용(안 제3조)
-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 재원을 근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재원으로 정비(안 제5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2025. 4. 14. ~ 4. 20.
- 협의 : 경제통상국 소상공인정책과
- 비용추계 : 비용추계 제외사유서 첨부

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”을 “법 제17조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4조 단서 중 “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」 제5조”를 “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」 제5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

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업무) 재단은 <u>다음 각 호의</u> <u>업무를 수행한다.</u> 1. <u>기본재산의 관리</u> 2. <u>신용보증</u> 3. <u>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</u> <u>리</u> 4. <u>경영지도</u> 5. <u>구상권의 행사</u> 6. <u>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</u> <u>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</u> <u>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</u> 7. <u>제1호 · 제4호 및 제5호의 업</u> <u>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도지</u> <u>사의 승인을 받은 것</u> 8. <u>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</u> <u>관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</u> <u>기업 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</u> <u>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</u> <u>업부장관 또는 충청북도 지사</u> <u>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의 승</u> <u>인을 받은 사업</u> 9. <u>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</u> <u>사업</u>	제3조(업무) ----- <u>법 제17조</u> ---- -----.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
제4조(업무구역) 재단은 충청북도	제4조(업무구역) -----

를 업무구역으로 하며 정관에 따라 업무구역안에 본점과 지점을 둘 수 있다. 다만, 「<u>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</u>」 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구역외의 소기업등에 대해서도 보증업무를 할 수 있다. 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~ 5. (생략) 6. <u>보증료등의 기타수입</u> <u><신설></u> ②·③ (생략)	----- ----- ----- 「<u>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</u>」 제5조----- ----- ----- -----. 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 ①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7. <u>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</u>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--	---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역신용보증재단법

제7조(기본재산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(財源)으로 조성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2. 금융회사등의 출연금
3. 기업의 출연금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

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·도에 보조할 수 있다.

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2. 20.>

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, 시·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, 출연의 방법 및 시기,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(업무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1. 기본재산의 관리
2. 신용보증
3.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
4. 경영지도
5. 구상권의 행사
6.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
7. 제1호·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
8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

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

9.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

□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

제25조(위임·위탁 등)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1. 법 제17조제6호에 따른 업무 중 신용보증에 부수되는 업무의 승인
2.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승인 및 변경승인

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재단이 금융회사등, 중앙회,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 금융회사등,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2. 8. 3.]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- ①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적, 임의적 발생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·첨부하여야 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.
다만,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○ 사 유

- 본 조례의 개정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재정수반 요인을 적시하고 있지 않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소요 예산규모 예측이 불가하여 제외함

○ 작성자

- 경제통상국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